

 신안산대학교	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	규정 번호	2-2-4
		제정 일자	2001. 3. 1.
		개정 일자	2023. 9. 21.
		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 제49조의 2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의 교원, 일반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에 재직 중인 호봉제교원 및 일반직원(이하“교직원”이라 한다.)에 한하여 적용한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1.12.23. 개정>

제3조(사무관장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업무의 관장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업무 : 기획처 <2021.08.20. 개정>
2. 일반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업무 : 기획처 <2009. 5.20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<2021.06.11. 개정> <2021.08.20. 개정>

제4조(명예퇴직대상) 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교직원은 본 대학에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, 정년 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교직원로 한다. 단, 대학 경영상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와 소속 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폐지된 경우 본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교직원이라도 허가할 수 있다.<2021.12.23. 개정>

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는 전항(前項)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 액 및 지급방법) ① 수당지급액은 별표 제1호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수당은 일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당해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내용은 규정 제7조의 시행 시에 공지하여야 한다. <2022.3.31. 개정>

제6조(지급액) 수당의 지급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제7조(공지) 사무관장부서장은 명예퇴직허가 예정인원, 신청기간, 지급방법, 지급일,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청시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지한다. <2009. 5.20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제8조(명예퇴직 신청) ①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직원은 제7조의 공지사항에 따라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사무관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2009.5.20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 <2022.3.10. 개정>

② 전항(前項)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 까지 취소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사 및 결정) 사무관장부서장은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1. 공 상자
2. 본 대학의 장기근속자
3. 상위 직에 있는 자 <2009. 5.20 개정>

제10조(위원회) ① 교원 명예퇴직심의대상자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② 직원 명예퇴직심의대상자 선정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11조(명예퇴직대상자 결정) 총장은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임면권 자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득한다.

제12조(결정 통지) 명예퇴직대상자가 승인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직원 제출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.

제14조(명예퇴직일 및 예우) ① 명예퇴직일은 매학기 말일로 하되, 본교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2022.3.10. 개정>

② 명예퇴직자의 퇴임식은 정년퇴임식과 같이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제1호)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<2022. 12. 15. 개정> <2023.9.21. 개정>

구분		산정 기준
퇴직 잔여기간	5년 이하 인 자	(평균월봉급액 × 50%) × 정년 잔여월수
	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자	평균월봉급액 × 50% × (60 + $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$)
	10년 초과인 자	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와 동일 (10년을 초과하는 정 년 잔여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)
평균월봉급액 기준	교원	본봉 + 연구보조비 + 학생생활지도수당(학사지도수당)
	직원	본봉 + 직책수당 + 업무보조비 + 학사지도수당

비고1. 평균월봉급액은 별표 제2호 명예퇴직수당지급 기준내역을 적용한다.

비고2.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
비고3. 2022년 4월 명예퇴직신청에 한하여 평균월봉급액의 비율을 50%에서 60%로 한시적으로 상
향한다. <2022.3.31. 신설>

(별표 제2호)

명예퇴직수당지급 기준내역

1. 별표 제1호의 “평균 월봉급액” 이라 함은 다음(표1-1)의 연간 총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
을 평균한 금액임.

(표1-1)

내역	교원	사무직원
월급여	본봉 + 연구보조비 + 학생생활지도수당(학사지도수당)	본봉 + 직책수당 + 업무보조비 + 학사지도수당